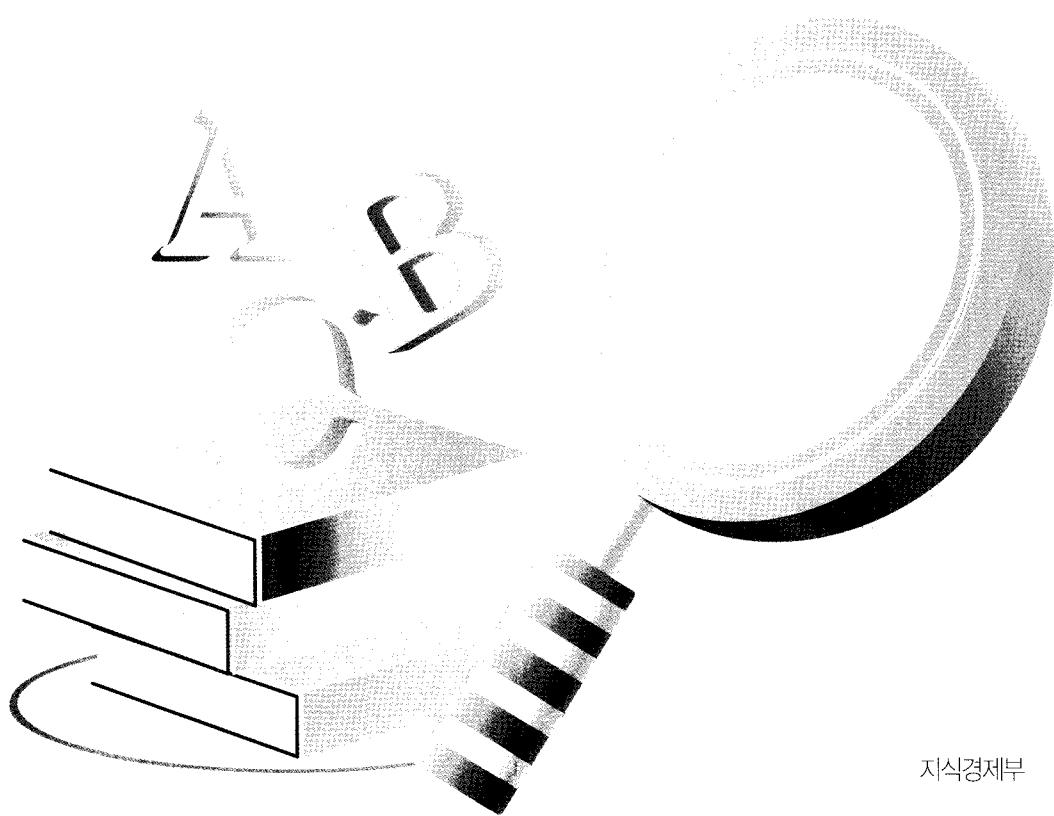


##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 추진



지식경제부

###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, 「도시가스사업법」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
지식경제부는 법 개정(2009.3.25)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,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,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.

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,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, 동 개정령안이 공포·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,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,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.



### ▣ 주요 개정조문

가스사고 예방 관련 12개, 기업활동 및 민원불편 해소 관련 31개,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관련 37개 등 총 8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\*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35개 조문, 도시가스 사업법령 45개 조문

1) LP가스시설 및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, 도시가스 시공감리 대상 축소,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주기 완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기업 활동 애로 및 민원 불편을 획기적 해소

가)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

○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성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을 0.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(액법 1)

○ 도시가스 배관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길이 산정시 가스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된 배관은 배관길이에서 제외(도법 1)

\* 원화대상 배관길이 및 인원 : 도외자 38.8km(3명),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18km(2명)

나) 안전관리 우수 인증 LP판매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기준 면제

○ 당해 LP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년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3년간 면제(액법 1)

다) LP가스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완화

○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LP

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기준을 총 저장량 250kg 이상에서 500kg 이상으로 완화(액법 1)

\* 대형할인마트에 공급되는 부탄캔의 최소단위가 1파레트(약 430kg)인 점을 감안 하여 허가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

라) 위험성이 낮은 가스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절차 면제

○ 사고위험성이 낮은 가스사용자 토지 안의 배관공사와 정압기 안전장치 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신고에서 제외(도법 1)

\* 시공기간 건당 3일 단축 및 연간 총 9억원의 시공비용 절감 예상

마) 도시가스배관 시공감리기준 완화

○ 시공감리대상 배관 최소길이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, 공동주택 부지내 배관의 시공감리방법을 전공정감리에서 일부공정감리로 완화(도법 1)

\* 일부공정감리는 전공정감리 대상의 30%정도 실시

바) 사용자 전용 정압기 분해점검 주기 완화

2) 가스사용자 정압기의 분해점검 주기를 3년에 1회에서 최초 3년에 1회 및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로 완화(도법 1)

KS표시 인증 가스용품 검사체계 개선, 전문교육의 정례화, 연료전환(LP가스→도시가스)시 안전조치 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적오류 및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근원적 예방

가)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전부  
생략제도 개선

- 설계단계검사는 최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제외하고, 모든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실시하며, 생산단계검사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LP가스 압력조정기, 퓨즈 콕 등 5개 제품에 대해 실시(액법 令, 則)

나)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

- 안전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한번 실시하던 것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매 3년에 1회로 정례화 (액법 및 도법 令)

\* 가스공급자 취급부주의 등 인적오류(Human error)에 의한 가스사고가 전체 사고의 55% 이상을 차지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강화 필요

다) 연료전환(LP가스 → 도시가스) 시 도시가스사업자,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기준 신설(도법 令)

- (도시가스사업자) LP가스시설의 철거 및 막음조치 확인후 가스공급
- (시공자) LP가스시설 철거작업, 막음조치 실시 등 안전조치
- (사용자) LP가스안전공급계약 해지, 안전

조치 완료 확인 후 사용

- 3) 그 밖에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규정 개선, 도시가스 정의 명확화, 벌크로리에 의한 LP 가스공급 제도개선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· 보완

가) 액법 제7조 및 제52조의 개정내용인 사업의 개시 및 재개시 신고 관련 내용과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(액법 令)

나) “천연가스 외에 석유가스, 나프타부생가스, 바이오가스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”를 “도시가스”로 용어정의를 명확화함(도법 令)

다) 벌크로리의 경우 LP판매사업자, 충전사업자 모두 이를 소유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위탁운송을 인정(액법 令)

\* 위탁운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LP가스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확고히 실현

라) LNG충전사업 대량수요자에 대한 천연가스 충전소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인 충전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공급근거 마련(도법 令)

## □ 향후계획

우리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,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,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.